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따른 법제개선연구

미국·일본의 법제연구동향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초고속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현행의 각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통신관계법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관계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실태를 소개한다.

주요 외국의 연구동향

다가오는 21세기 초고속통신망시대에 대비하여 테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등 첨단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꿈의 통신망'이라 불리우는 초고속통신망구축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정보화 촉진기본법」도 초고속통신망구축을 위한 지원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현행의 각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통신관계법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관계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일본·프랑스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입법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미 2~3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의 활동

미국에서는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IITF)」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①통신정책위원회 ②응용 및 기술정책위원회 ③정보정책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조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연구는 위의 「정보정책위원회」(Information Policy Committee)의 소관이다. 이 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작업반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행정작업반(정보보존, 청구권제도 연구)

기술적·정책적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의 접근 및 분배과정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유통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정보화, 행정규제의 완화, 각 부처의 성공사례등을 수집·보급하여 정보화추진의 확산을 전담하고 있다.

이 행정반에서는 법제도 분야에서 새로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이하 'EFT법'이라 함)을 1978년에 제정하여 전자자료 이체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전자문서의 보존과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청구권'(FOIA)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 s. c. 552)이 정보화시대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정보의 개념이 종래의 '서류'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처리정보등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래의 정보자유법(FOIA)에서 컴퓨터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개정의 움직임이 92년이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 102연방의회에 「전자정보자유개선법안」(Electronic Frssdom of Information Improvement Act)이 제안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의 접근,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입법예고한(95. 7. 20)「정보공개법안」에서도 컴퓨터처리정보까지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프라이버시 작업반(개인정보 제공 등 연구)

미국에서도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된 미국은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개인에 관한 자기정보의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정보의 열람·정정 등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이 쇄도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대폭적으로 전산화하게 되었다.

종래의 문서형식으로 보관되었던 자료가 컴퓨터처리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즉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서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한 것이 도리어 프라이버시침해가 늘어났다는 법의 역기능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1978년에 재정적 프라이버시법, 1988년에는 컴퓨터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법등 일련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계속 제정, 보완하게 되었다.

이 「프라이버시 작업반」의 주요 연구과제는 「개인정보제공 및 사용에 관한 원칙」을 관계 전문가와 국민 각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고 컴퓨터시대에 개인정보의 제공방안과 이에 대한 이용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작업반(저작권법의 개정연구)

미국은 국가정보기반(NII)을 구축하여 세계 정보통신망을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적소유권분야로서 세계 다른 나라보다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기들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보호제도가 미흡한 상대방국가에 대해서 통상 압력등을 통하여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법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정의 움직임은 디지털정보의 축적과 전송의 거대화, 대량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디지털정보가 저작권에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핵심연구과제를 이 '지적재산권반'에서 전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멀티미디어시대에서 저작권법의 법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곧 저작권법 개정안의 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위에서와 같이 미국은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IITF)」가 주축이 되어 「국가정보화기반(NII)」의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의 핵심으로 ① 행정규제완화 ② 프라이버시보호 ③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등을 들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유니버설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One Policy, One System) 곧 하나의 통신체계가 하나의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 밖에 미국정부는 「국가정보화기반」구상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 민간투자 촉진, 경쟁의 활성화유도

- 유니버설서비스의 개념 재정립
- 혁신기술의 개발촉진
- 쌍방향, 유저중심의 네트워크운영
- 정보네트워크의 보안대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강화
- 무선주파수의 관리개선
-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
- 정부보유 정보의 접근, 공급 개선을 위한 정보자유법 개정

일본 : 멀티미디어 연구위원회의 활동

정보통신법제분야

일본의 경우도 2010년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의 국가정보화기반(NII)에 자극을 받아 본격적으로 법제도 개선분야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에서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4년에 민영화, 자유화를 단행한 전기통신역무제도의 개혁(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유니버설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의 개정·완화 NHK(일본방송협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적인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국이 학교, 도서관, 병원, 진료소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정보가 생존배려, 사회권적 평등의 원리 아래 입법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이용이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 등 각 방면에서 '생존배려'의 측면에서 특별법규 제정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분야 연구

일본 정부(문화청)에서는 「저작권심의회」내에 멀티미디어연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라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1992년에 설치된 이 위원회에서는 1994년 4월에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멀티미디어시대에 핵심적인 연구과제는 지적재산권분야 중 「저작권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일본의 경우도

2010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의 국가정보화기반에 자극받아

본격적 법제도 개선분야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멀티미디어소프트의 저작권법상 문제점으로 ①제도상의 문제점 ②기존의 저작물처리 ③저작물의 집중관리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통신시대의 법적과제로 ①EDI 시스템의 기능과 과제 ②저작권보호와 정보와 정보의 유통, 이용 ③디지털시대의 저작권문제 ④저작물의 개별과 동일성유지권등의 연구가 학계, 정보통신 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연구의 방향

앞에서 미국·일본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개괄적으로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의 기본계획수립에 ①정보통신이용자의 권리보호(3호) ②지적소유권의 보호(4호) ③개인정보의 보호(5호)등 정보화사회에서 지적재산권·사생활의 비밀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된 「정보화촉진위원회」(정보화촉진법 8조)의 소속으로 실무공무원 또는 학계 기타 전문가등을 중심으로 「법제도개선반」을 두고 ①저작권법연구반 ②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연구반 ③컴퓨터범죄등 정보보안법제 연구반 ④기타 관련법률 연구반을 설치하여 입법연구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